

#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7. 24

다. 회부일자 : 95. 7. 26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 95. 8. 10

·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결 : 95. 8. 10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지적과장 김조삼)

가. 제안사유

○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위법에 제정된 법조문 취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조문의 일부개정으로 위원장의 의사결정권 부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허 면)

- 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 영하는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위원장이 이중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므로 금번 이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하는 바, 위원회의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결로 보는게 당연하다 할 것이며, 같은 제1항에 의결종족은 과 반수를 요하고 있으므로 가부동수의 의사표결은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아 원안의결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지적과장 김조삼)

- ▶ 조례 제정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가부동수의 사례가 있었는데 가부 동수시 위원장의 결정권 부여로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와 문제점이 없었 다면 당초 조례제정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 ▷ 가부동수의 사례가 문제점은 없었으나 본조례 제정시 잘못되어 헌법이나 상위법의 법조문 취지에 따라 개정코자 함.

5. 토론요지 : 원안가결

(반대없음)

6.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②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u>결정권을 가진다.</u>		제6조 ②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u>부결된 것으로 본다.</u>		